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52 | 2024.09.09 (2024.09.02~09.0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02~09.08)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무조정실>은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경제·사회 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24~'27년)**」을 발표했습니다. 그 간 정부는 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른 소통량(트래픽) 증가 및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중장기 주파수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핵심 자원화하여 산업·공공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디지털화, 비금융회사 금융참여 확대 등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협회·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규제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효과적 통제를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거리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증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절차,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신규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및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신용등급 제공업의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하는 등 신용정보업의 주요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특허청>은 비영리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해외 판매업자가 상품 등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과 구별되는 ‘공급’이라는 새로운 ‘상표의 사용’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사업보고서에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공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할증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실험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

기상여건 및 고열·한랭·다습한 상태 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작업중지권의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을 추가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의 대상에 기상여건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를 추가하고,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를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2인)**」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복잡한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등이 제출 및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9/9(월)부터 9/12(목)까지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9(월) 정치 분야, 9/10(화) 외교·통일·안보 분야, 9/11(수) 경제 분야, 9/12(목)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9/10), <외통위>는 현안질의(9/11), <산자중기위>는 통상현안보고(9/9)가 계획되어 있으며, <운영위>, <과방위>, <환노위>, <여가위> 및 <예결위>에서 법안 및 결산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국무조정실) 8
-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금융감독원)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3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4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16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특허청) 17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기상청) 17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2인) 19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2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2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1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23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2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2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6인)	2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2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2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2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0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의원 등 11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3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3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의원 등 11인)	3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의원 등 13인)	3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0인)	3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3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3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3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3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3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3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의원 등 10인)	38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3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의원 등 14인)	3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3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4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4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의원 등 10인)	4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0인)	4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4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의원 등 10인)	4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4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2인)	44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의원 등 12인)	4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4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의원 등 10인)	4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48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4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4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49
-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4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5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5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52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5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5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02~09.08) [바로가기](#)

- [에너지·자원] 계통 포화 지역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시행에 따른 영향
- [ESG] 생물다양성 뉴스레터-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배경: 제도적 접근방식
- [건설/부동산]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 (2024년 9월 1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 -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등을 통해 기업책임 강화 - BMS·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화재 예방·대응능력 제고	2024-09-06
-------	--	------------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음.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음

*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등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기차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배터리 정보공개 등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
-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호를 강화
-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함
-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 예방을 강화

②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련 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
-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
-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③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
-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

-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
-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 개발도 지속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부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 발표

- 이용기간 만료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는 가입자 수, 소통량 등을 고려하여 재할당 추진
- 5세대 이동통신 추가 주파수는 업계 수요, 품질 향상,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할당 필요성을 검토
-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절차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이동수단 혁신, 위성 등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주파수 공급 추진

2024-09-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경제·사회 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24~’27년)」을 발표했음. 그 간 정부는 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른 소통량(트래픽) 증가 및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중장기 주파수 전략을 수립해왔음

< 그 간의 주파수 전략 수립 현황 >

구분	모바일 광개토계획 (’12~’13년)	한국형 정보통신기술(K-ICT) 스펙트럼 계획 (’17년)	5세대 이동통신+ 스펙트럼 계획 (’19년)
주요 내용	4세대 이동통신(LTE) 주파수 공급 → (’13년) 1.8GHz 대역 등(90MHz폭) → (’16년) 2.6GHz 대역 등(100MHz폭)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 (’18년) 3.5GHz 대역(280MHz폭) → (’18년) 28GHz 대역(2,400MHz폭)	와이파이 용도 비면허 공급 → (’20년) 6GHz 대역(1,200MHz폭)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 (’22년) 3.4GHz 대역(20MHz폭)

주파수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최근 디지털 전환이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넘어 경제·사회 전 분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 및 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디지털 경제의 확장과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 ‘디지털 권리장전(’23.9)의 원칙을 고려한 전파자원 배분을 통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활용 전략이라고 밝힘

이번 계획에서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핵심 자원화하여 산업·공공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음

- ①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해 가입자 수, 소통량(트래픽),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한 재할당을 추진하고, 이동통신 주파수의 추가공급 · 광대역화 검토 및 다양한 산업군 개방을 통한 최적 활용을 추진
- ② 주파수 적기 공급을 통해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저궤도 위성통신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비면허 주파수 적극 활용을 통해 디지털 혁신 확산을 지원
- ③ 공공 주파수 확보를 통해 위험·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강화
- ④ 주파수 공동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을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Kick-off 회의 개최
 -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 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 차별화 추진

2024-09-05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디지털화, 비금융회사 금융참여 확대 등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협회·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T/F」를 구성하였고, '24.9.5.(목)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은행 · 보험 · 카드 · 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내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하였고, 금융시장의 위험특성도 전통적인 신용·시장위험 등 거래위험 외에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규제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효과적 통제를 도모한다고 밝힘

향후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마련할 계획임

공통과제로는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 및 역할 배분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질적규제)하고,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양적규제)할 계획이며,

업권별로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의 중점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힘

[업권별 향후 추진 일정(잠정)]

권역	추진 내용	일정
공통	· 운영위험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24.12월
은행	· PSMOR 이행현황 점검	'24.12월
	· 위험평가 업무에 PSMOR 준수여부 반영	'25년
보험	· '보험개혁회의' 논의 및 세부평가기준 등 마련	'24년
	· 운영위험평가 등급구간, K-ICS 위험계수 산출 등을 위한 계량영향 분석	'25.상반기
	· 보험법령 개정	'25.하반기
카드	· 시장의견 수렴 거쳐 시행방안(초안) 마련	'24년 말
금융IT	· IT위탁·제휴 집중업체 안전성 점검 및 감독방안 마련	'24.12월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9-02 시행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가스도매사업자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을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1만 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서 ‘30만 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15 예정
-------	--------------------------	---------------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723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 및 법률 제20335호, 2024. 2. 20.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해당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며, 이러한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1-01 예정
-------	-------------------	---------------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검정 소관 주무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하고, ‘스마트제조’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04. ~10.14.

현행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 참여기준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어 최근 재생에너지 연계,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대폭 확대 예정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 소요,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장거리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기준 완화 근거 마련 (현행 제18조제3항 개정)

-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읍·면·동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고시 예정)의 설비의 경우 시·군·구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로 기준을 완화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전화: 044-203-3931, 팩스: 044-203-4756)

산업통상자원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04. ~10.14.
---------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1월)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 지원금 단가가 고정되어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14년 법령 제정 이후 '23년 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률(근거: 통계청) 18.5%를 지원단가에 반영, 상향 조정 (별표 2 제1호다목)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전화: 044-203-3931, 팩스: 044-203-4756)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02. ~10.14.
-------	-----------------------------	------------------------

그간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수직농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수직농장 신설 (안 제1조의2제4호의2)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으로서 인공 광원을 사용하고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전화: 044-201-3676, 팩스: 044-201-5564\)](tel:044-201-3676)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02.
~10.14.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며, 기술진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승인 등 규정 (안 제71조의2)

-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및 승인서 등 통지 규정
- 배수설비 시공 요건을 갖춘 자, 배수설비 최초 사용 및 구조 변경시 신고 규정 마련

② 배수설비 등 조치명령 규정 (안 제71조의3)

-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보수, 철거 등 조치명령 시 조치내용 및 이행 기간 규정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위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제81조제1항제26호, 안 별표 18)

-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승인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환경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④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결과 등의 접수와 과태료 부과 권한위임 및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제81조제2항제9호의3·제25호, 안 별표 18)

-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의 결과와 개선계획,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⑤ 기타 오기 정정 (안 제81조제1항제26호·제2항제25호)

※ 문의처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전화: 044-201-7068, 팩스: 044-201-7070\)](tel:044-201-7068)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04.
~10.1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절차, 과태료 부과와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업의 형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안 제9조제4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을 구체화

② 배출권의 추가할당 (안 제27조, 제28조)

- 쟁송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 시,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③ 배출권의 할당취소 (안 제29조제3항·4항·5항 등)

-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의 할당취소 기준을 정비하여 감축노력과 상관없는 기업의 형재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배출량 감소 구간별로 할당 취소량을 차등화하여 규제 순응도를 제고
- 쟁송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 시, 그 값이 감소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④ 배출권 시장참여자 확대 (안 제31조)

-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주체 등 시장참여자를 확대

⑤ 배출권의 중개거래 (안 제31조의2)

-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정 시장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규정

⑥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안 제32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경우 거래목적에 구분하도록 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해 취득한 배출권을 대신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할 경우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

⑦ 배출권 거래의 신고 (안 제33조)

- 배출권거래소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거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을 거래한 내역을 거래계정에 등록한 경우 거래소에서의 거래자 또는 위탁자가 배출권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⑧ 배출권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 (안 제34조, 제35조)

- 배출권거래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사항을 추가하고, 거래소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임직원 등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상근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등 준수사항을 명시

⑨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등록취소 및 준수사항 (안 제36조 등)

-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설비기준을 규정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세부요건과, 등록취소된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처분에 관한 절차 등 규정
- 법률에서 정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준수사항의 세부적인 기준과 규정등을 명시(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시장참여자 명세 통보, 불건전영업행위 및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등)

⑩ 시장참여자에 대한 감독 (안 제36조의13)

- 환경부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배출권 거래 체계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⑪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안 제37조의2)

-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지정 취소된 시장조성자의 배출권 처분에 관한 절차 등 규정

⑫ 시장 안정화조치의 기준 (안 제38조)

-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변경하여 과도한 배출권가격 하락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 \(전화: 044-201-6590, 팩스: 044-201-6594\)](tel:044-201-6590)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4.
~10.14.

효율적인 허가절차 진행을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신규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및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신용등급 제공업의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하는 등 신용정보업의 주요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제 근거 신설 (안 제4조의2)

- 효율적 허가절차 진행을 위해 타법과 유사하게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 대한 예비허가 근거를 신설함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안 제5조)

-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함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사업체 조사·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 규정에 대한 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함

④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CB의 평가모형 검증 추가 (안 제26조의3)**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 신용평가검증위원회에서 기업CB의 신용평가모형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⑤ **법원 판결로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요율 정비 (안 제42조의2)**

-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요율이 시중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규정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화: 02-2100-2623, 팩스: 02-2100-2548)

특허청**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4.
~10.14.

현행 상표법상 ‘수입’은 영리목적의 전제하므로 비영리목적의 위조상품 국내 반입행위는 상표법상 ‘수입’ 및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국내로 위조상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표의 사용’의 정의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해외 판매업자가 상품 등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과 구별되는 ‘공급’이라는 새로운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으로 규정함 (안 제2조제1항11호다목)

※ 문의처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전화: 042-481-3310, 팩스: 042-472-3468)

기상청**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024.09.03.
~09.20.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2조 및 제3조)

-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공고 방법과 연도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②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 체계적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 내용을 정하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생산하는 방법을 규정함

③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 기후예측 정보와 이상기후 전망 및 기후전망 정보의 세부적인 생산 내용과 방식을 규정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신청, 심사 등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④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부처 간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활용 방법을 규정함

⑤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기상청장이 지원할 기후위기 계획 또는 대책을 추가하여 정하고, 감시·예측정보와 조사·연구된 결과를 이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수행할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

⑦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안 제17조)

- 교육사의 자격요건과 자격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정함

※ 문의처 : [기상청 기후정책과 \(전화: 042-481-7377\)](tel:042-481-7377)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9.06.
~10.15.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하려면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반행위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을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8, 팩스: 043-719-2150\)](tel:043-719-216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희의원 등 12인)**

2024-09-04 발의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진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등 증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증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진술 요구로 증언·감정인·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청문회 등의 실효성과 증언·감정인·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9조제5항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2024-09-02 발의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서 비밀유지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당화해왔고, 수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조력을 받는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해왔음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변호사의 변호권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는 처벌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2024-09-04 발의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움

과거 코로나를 겪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에 따라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안 제364조의2 및 제368조의5 신설 등)**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24-09-05 발의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32조)

정무위원회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2024-09-02 발의

현행법 제3조의2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 가지 사실(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조물의 기능적 결함, 설계상 결함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제조업자와 소비자, 검증기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는 분야에서 피해자가 위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2024-09-02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09-03 발의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이용대금 지급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유통의 어려움 등 경영상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특히, 설이나 추석 명절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대체휴일과 겹쳐 장기간 연휴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함. 실제로 2017년 10월 연속 공휴일이 지속된 바 있으며 2024년 추석 명절의 경우 5일 연속 공휴일이고 2025년 추석에도 7일 연속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법에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09-03 발의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급증한 2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디지털 경제의 속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위메프 사태 등이 발생하였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을 다른 기업 매입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위메프 사태는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방증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중개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표준계약서,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5일 내에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대금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 (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09-03 발의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임

이에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타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취소한 소비자에도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여 통신판매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안 제20조의4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2024-09-04 발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화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재화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설 규정에 따른 중복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2항제10호,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제24조제2항)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2024-09-04 발의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납품업자에게 공급받거나 직매입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2024-09-04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가맹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활동 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 (안 제13조제2항 삭제)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

2024-09-04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기관 등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정보의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적 조치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안 제4조의2제1항)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2024-09-05 발의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법인이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의 등록과 폐업이 빈번하며, 최근에는 가장납입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서류상으로만 갖춘 뒤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을 갖추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한 대부업자가 적발된 바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등 불법 대부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해당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그 이자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며, 미등록대부업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으로써 고금리 불법 영업의 근절과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5, 제8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2인)

2024-09-05 발의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세이온클라이밋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되, 결의 대상은 회사뿐 아니라 연결종속회사의 기후전략 등을 포함하고 기후전략은 3년마다, 이행현황은 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나 권고적 효력만 가지게 함.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조의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기후전략을 수립하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 제160조의2, 제165조의21 신설)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2024-09-05 발의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얻게 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의무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맹본부의 사업을 비교하여 가맹점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영업비밀로 분류하기보다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0호라목 및 제6조의2제4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2024-09-06 발의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11조 및 제12조의3)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 ②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안 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 ③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 (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 ④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안 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 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안 제59조의2제1항)**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⑥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 (안 제129조제1항제3호)**
 -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⑦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

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⑧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9-02 제출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상속인·수증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할증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2제11항 신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비율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 등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매출액 평균금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도록 함

②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 (안 제20조제1항제1호)**

- 물가·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③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안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1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및 '3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통합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④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현행 제63조제3항 삭제)**

-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퍼센트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함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안 제55조제1항)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 (안 제6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6조의 18제1항·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③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 (안 제76조의22)

-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④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안 제93조의3제3항 신설, 안 제93조의3제4항·제5항)

-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 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안 제112조의2제4항 신설)

-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⑥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안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9-02 제출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24-09-04 발의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 투자비용 중에는 안전·보건 업무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사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8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2024-09-05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2024-09-05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되어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국가 전략 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면서, 해당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은 시행령에서 국가 전략 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2024-09-05 발의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1항제8호)

기획재정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2024-09-06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K-콘텐츠 제작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하여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 등).
- ②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함** (안 제25조의6제1항제2호)
- ③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제작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함** (안 제25조의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09-02 발의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초기에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수사기관이 범죄 초기에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2024-09-02 발의

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남.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은 불법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SNS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함 (안 제44조의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4-09-03 발의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11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2024-09-03 발의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24-09-04 발의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담금 부과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협찬 매출액을 늘리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밖에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09-05 발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별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조제2항, 제44조의7제1항2호의2, 제74조제1항2호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2024-09-05 발의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의 진입요건이 낮아 수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9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2024-09-04 발의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의 화재보다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피해의 규모를 줄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2024-09-05 발의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위반 정도가 심각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2024-09-05 발의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오락·체험·교육 등을 위해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레저스포츠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신고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9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2024-09-03 발의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한국이 아열대 기후대로 변함으로써 전통적인 먹거리였던 농작물들의 작황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온대과일인 사과와 감의 경우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에서 자랄 수 없기에, 농진청에서 12년에 걸쳐 품종개발 통해 섭씨 30도 이상에서도 상품성이 좋은 사과를 개발함. 그러나 기후위기가 더 빠르게 닥쳐오는 실정에 평균 10년 15년이 걸리는 품종개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에 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만들려면 유전자 형질 변형 기술도 활용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부 유전자의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함으로써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실험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3 신설 및 제22조의2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

2024-09-03 발의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 동일 지역 거주인은 물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소유주 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2024-09-05 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1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2024-09-05 발의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임

한편, 당초 기초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농촌의 낮은 지가를 바탕으로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민 생활 터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최소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 자가소비 등 그 수혜가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타당성은 낮다 볼 수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가속하고자 함 (안 제27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2024-09-05 발의

현행법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수탁·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음. 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판사·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수탁·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보다 전문성·공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09-0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규정에 따라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3)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2024-09-02 발의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함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구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86조 및 제86조의2)
- ②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86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유산 비중(유산율)은 2013년 37.6%에서 2022년 47.6%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산율도 6.5%에서 9.8%로 눈에 띄게 높아졌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신 36주 이후'부터를 임신 말기로 간주하고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29주부터 42주까지를 임신 후기로 구분하며,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기간으로 보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일수를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반면, 수술·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성장과정상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연장 근거가 없는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수유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노동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수유시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 (안 제60조제6항)
- ② 노동자가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에 30일을 추가 함 (안 제74조제1항 등)
-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신주수를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4주 이내, 28주 이후'로 확대함 (안 제74조제7항)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024-09-03 발의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 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2024-09-04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설·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기후위기로 해마다 폭염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비통 속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대상에 폭염·한파 등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어, 기상여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

한편, 법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동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노동자가 국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임. 산업현장의 편리와 효율, 영세사업장에 대한 너그러움과 온정주의가 약자인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결코 안 됨

이에 기상여건 및 고열·한랭·다습한 상태 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작업중지권의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을 추가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의 대상에 기상여건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를 추가하고,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를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통해 예방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의 종류에 폭염·한파·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한랭·다습한 상태(이하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함 (안 제 39조제1항제7호 신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제3항 신설)
- ③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기상여건등에 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곧바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거나(안 제52조의2제1항), 또는 사업주에게 먼저 각종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안 제53조의2)
- ④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대피 조치 요건에 기상여건등에 의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을 추가함 (안 제 51조)
- 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험의 존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근로자가 판단하게 함 (안 제52조제1항 전단)

- ⑥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때에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그 작업중지·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2조제1항 후단)
- ⑦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 (안 제53조의3)
- ⑧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상여건등에 노출되어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타 근로자를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 소방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3조의4 및 제17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⑨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유해·위험작업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폭염·고열을 비롯한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안 제29조제3항)
- ⑩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작업중지·대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안 제15조제1항)
- ⑪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작업중지·대피의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고, 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그 내용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함 (안 제25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등 12인)

2024-09-04 발의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과 사용·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음. 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영향조사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평가됨

이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그 발생 방식에 따라 1차·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함 (안 제2조제1호)

- ②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③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7조)
- ④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주민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안 제8조)
- 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안 제9조)
- ⑥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으로서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함 (안 제10조제1항)
- ⑦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함 (안 제10조제2항)
- ⑧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11조)
- ⑨ 폐기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해당 폐기물이 하천·호소 등에 배출된 폐기물일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폐기물일 때에는 해양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수거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 ⑩ 폐기물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처리·수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2항·제5항)
- ⑪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방안을 조사·연구하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도록 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 ⑫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2024-09-04 발의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임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요건도 낮추는 등 임금체불 예방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 (안 제37조)
- ②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 (안 제43조의2)
- ③ 상습체불사업주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43조의4 신설)
- ④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3조의5 신설)
- 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전산망 이용 및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6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2024-09-04 발의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로 규정되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고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2024-09-05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2024-09-05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행법령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59조)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1인)

2024-09-05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2024-09-06 발의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됨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인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제조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안 제33조의 3)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2024-09-02 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경직적으로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 변수로 인해 사업추진 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사업지원에 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사업성도 악화되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의 지원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복잡한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만 해당),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만 해당)으로 정의함 (안 제2조)
- ③ 사업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을 조정하는 등 인·허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④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나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하도록 정함 (안 제9조)
- ⑥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할 수 있게 하며, 시·도지사가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⑦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정비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상담 및 지원, 합동조정회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함 (안 제12조)
- ⑧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⑨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6조)
- ⑩ 역세권 등에서 법정상한용적률보다 완화하여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 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 ⑪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20조)
- ⑫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안 제21조 및 제22조)
- ⑬ 정비사업의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안 제23조 및 제24조)
- ⑭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 (안 제25조)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2024-09-02 발의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계획의 일률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고,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9조)
- ②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0조)
- ③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 ④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요건을 합리화함 (안 제35조)
- ⑤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 ⑥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안 제72조)
- ⑦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8조)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2024-09-03 발의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2024-09-04 발의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그 대부분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는 등 페달 오조작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 장치의 장착 확대를 위한 장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024-09-04 발의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시·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 (안 제53조)
- ② 시·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 (안 제54조)
- ③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 (안 제54조의2)
- ④ 시·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 (안 제67조)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3인)

2024-09-06 발의

현행법은 지난 2023년 개정(2023.8.16.)을 통해 전기차 보급 현실을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의무적 기재사항에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2025.2.17. 시행예정)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6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9/9(월) 14:00	대정부질문(정치)
	9/10(화) 14:00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9/11(수) 14:00	대정부질문(경제)
	9/12(목)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2.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9/9(월) 10:00	소위원회 구성의 건,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법안 상정
법사위	법안1소위	9/9(월) 10:00	법안 심사
	전체회의	9/10(화) 10:00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9/11(수) 10:00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과방위	결산소위	9/9(월) 09:00	결산 심사
	전체회의	9/9(월) 11:00	공청회 계획서 채택, 법안 의결,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외통위	전체회의	9/11(수) 10:00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현안질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9/9(월) 10:00	통상현안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9/11(수) 10:00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예결산소위	9.10(화) 10:00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환노위	전체회의	9/9(월) 10:00	법안 상정
		9/12(목) 10:00	법안 의결
	환경법안소위	9/10(화) 10:00	법안 심사
	고용노동법안소위	9/11(수) 10:00	법안 심사
여가위	법안소위	9/9(월) 10:00	법안 심사
	예결산소위	9.10(화) 10:00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전체회의	9.11(수) 10:00	법안 의결,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예결위	전체회의	9.9(월)~9.12(목) 10:00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9(월) 10:00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AX)	정동영·최형두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9/9(월) 10:00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	정연욱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9(월) 10:00	(기후재정 현황과 구조적 대안 모색)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 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나?”	박정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9/9(월) 13:30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박홍배·이학영· 박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9/9(월) 14:00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방안 국회 세미나	박상혁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9/10(화) 07:30	[국회 인공지능 포럼 초청 특별강연] 전문가 AI로 향하다	이인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0(화) 10:00	새롭게 도래하는 AI 시대,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이인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0(화) 10:00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박홍배·강득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0(화) 15:00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맹성규·권영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9/11(수) 13:30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우재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1(수) 14:00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방안 : 보장성 강화, 정부 정책 그 이후	전진숙·이주영 의 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2(목) 10:00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박지혜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9/12(목) 10:00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김성환·박정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9/12(목) 14:00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강훈식·오기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3(금) 09:30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방안 설명회	이종배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3(금) 14:00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	박지혜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9/11(수)	「이달의 입법민원」 (2024.8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9/12(목)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4-7호)」 발간		
	9/1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5호 발간-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개정	국회도서관	
	9/11(수)	「The 현안」 제27호 발간 - 인공지능시대, 혁신과 규제의 AI 입법례		
	9/11(수)	「금주의 서평」 제695호 발간 - 도서명 : 물리학자는 두뇌를 믿지 않는다 - 저자 : 브라이언 키팅		
	9/11(수)	「World&Law」 2024-16호 발간SNS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면?		
	9/11(수) 10:00	「2024년 상반기 세수부진 및 하반기 재정·경제 여건 점검」 현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2(월)	「팩트북」 제111호 발간 - 국민연금 개혁	국회도서관	
	9/2(월)	「The 현안」 제26호 발간 - 기본소득, 개념과 실험		
	9/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4호 특집호 발간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9/4(수)	「금주의 서평」 제694호 발간 - 도서명 : 새우에서 고래로 - 저자 : 라몬 파체코 파르도		
	9/6(금)	「현안, 외국에선?」 제90호 발간 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9/2(월)	「Futures Brief」 제24-06호 발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단과 새로운 가능성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02~09.08)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3(화)	에너지·자원	계통 포화 지역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시행에 따른 영향
9/3(화)	ESG	생물다양성 뉴스레터 - 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배경: 제도적 접근 방식
9/4(수)	건설/부동산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9/6(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 (2024년 9월 1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